

# 2023 판례 · 기출증보판 테마 형법 정오표(수정본)

앞서 올려드린 “2023 판례·기출증보판 테마 형법 정오표”에서 누락된 부분입니다.

## 〈각론 I 권〉

p.352 중간 “• 기 타” 1. 전부 교체

1. 채권양도계약 :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,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(대판 2022.6.23, 2017도3829 전원합의체 :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.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). 19 · 21. 법원행사, 14. 변호사시험 · 순경 2차, 17. 수사경과, 16 · 22. 경찰승진

예 ①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채권양수인의 승낙 없이 자신의 동생에게 빌려준 경우 ⇨ 횡령죄 ×

② 甲은 임대인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乙에게 양도하였는데도 丙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丙으로부터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⇨ 횡령죄 ×

### ▶ 유사판례

채권양도담보계약 :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후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⇨ 횡령죄 ×(대판 2021.2.25, 2020도12927 :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○,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위하여 위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 ✗). 21. 7급 검찰

## 〈각론 II 권〉

p.56 문제 8번 해설 ③ 교체, 정답 교체

③ ✗ : 횡령죄 ✗(대판 2022.6.23, 2017도3829 전원합의체 : 금전의 소유권은 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)

정답 8. 정답 없음